

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폐지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91
----------	-----

2020. 9. 1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. 7. 2. 강남구청장(치수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0. 9. 17.)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안전교통국장 김만호)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므로,
-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개정으로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

4.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), 제76조(권한의 위임 등)
- (2)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(권한의 위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(1) 입법예고(2020. 5. 22. ~ 6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아님
- (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영향평가 제외 대상임
- 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대상임

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상원)

- 본 폐지조례안을 통해 폐지하고자 하는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는 강남구청장 제출로 제정·공포(조례 제752호. 2008. 7. 4)되었음
- 본 조례는 당초 「자연재해대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함)제4조1)에 따라 제정되었으나 법 개정(2017. 1. 28)으로 조례 위임근거가 삭제되고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2)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3)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

1) (* 개정전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(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) 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고, 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(권한의 위임 등) ④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
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⁴⁾에 해당되므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폐지이후 규칙제정 계획 및 해당 위원회 구성·운영계획의 설명은 필요해 보임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없음”

7. 토론 요지 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·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- 3)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제73조(권한의 위임)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[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(이하 "해당 권한"이라 한다)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]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1.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
 2.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
 3.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
 4.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
 5.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
 6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
- 4)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하게 수행하는 하는 사무는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. 단체위임사무는 명시적으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하고, 그 사무를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“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”에게 위임한 사무를 말한다. 기관위임사무는 법률의 근거에 따라 “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의 장”에게 위임된 사무를 말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을 받았다면 그 사무는 지방의회를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자치단체장의 사무로만 보아, 이러한 사무는 단체장이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제정할 수 있는 자치법규인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
- (※출처 : 2019 자치법규 업무매뉴얼, 행정안전부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9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7. 2.
제출자 : 강남구청장
제출부서 : 치수과

1. 제안이유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므로,
-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개정으로 조례 위임 규정이 삭제되어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조(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), 제76조
(권한의 위임 등)

(2)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(권한의 위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나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20. 5. 22. ~ 6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아님

(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영향평가 제외 대상임

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 대상임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
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안전교통국 치수과	
연 락 처	(02) 3423 - 6595